

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고시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(장기요양기관의 지정) 및 「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」 제10조(심의·의결)에 따라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21년 10월 29일

오 산 시



■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

(기준일 : 2021. 9. 31.)

구분	노인 인구수	장기요양급여 수요		비고
		수요	공급	
		장기요양등급 (1~3등급) 인정자수의 80% (명)	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(명)	
오산시	23,148	1,257	1,020	

※ 기준고시는 연1회 이상 고시 예정이며,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전 까지 매월 고시 예정

※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 접수일 기준 고시자료를 지정심사에 반영